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이해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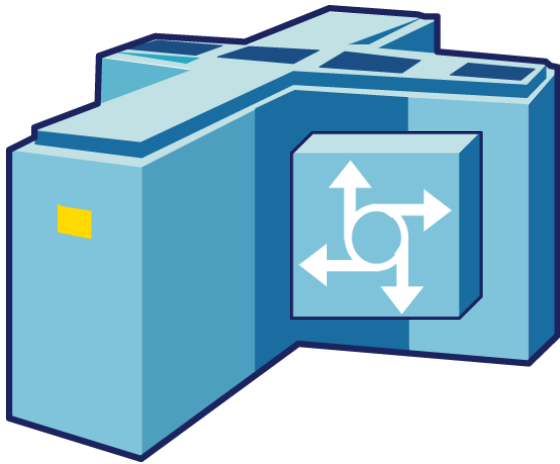
자본시장조사단 황현일 사무관 (변호사)
(02-2156-3311, Lawyer@Notguilty.co.kr)

2015. 5. 22.

03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사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한 시세조종 성립여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주문을 제출한 이상,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인정될 수 없는가?

매매주문 행태, 알고리즘 매매 조건의 변경 및 제출권한, 종목선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고리즘 운용자가 시세조종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세조종 성립 가능** (2014.5. T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알고리즘 트레이딩 허수주문 대량제출



거래 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대량
제출, 이에 관한 반복적 정정·취소

해당 종목의 거래상황·거래규모·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다면 **과징금 부과 가능**

단,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특성을 고려할 것(단순히 취소·정정이 빈번하다고 할 지라도 허수주문으로 판단하지는 않음)

알고리즘 트레이딩 조작 실수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에 변수를
잘못 입력하여,
대규모 허수성 호가 및 가장매매가 발생

형사벌과 달리 **행정벌은 과실의 경우에도 제재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개발·조작·운용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허수성 호가 및 가장매매가 발생하여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었다면 과징금 부과 가능